

총판계약, 독점판매, 독점라이선스 계약에서 계약종료 시 보상여부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독점계약 Termination + 보상청구 쟁점

독점계약 종료 + 보상청구 여부

- 구별 : 대리상계약(commercial agent agreement) vs 판매점계약(distributorship)
- 대리상계약 - 본인으로부터 대신할 수 있는 권한 받음 + 대리 또는 중개 업무 + 거래효과를 본인(공급자)에게 귀속 +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
- 판매계약 - 자기 명의로 계산으로 판매행위 + 거래효과가 본인(공급자, supplier)이 아닌 판매자에게 귀속
- 대리상 계약 당사자 : 상법 제92조의 2항에 근거하여 대리상의 활동으로 영업상 거래가 현저히 증가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이익이 발생하면 그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매계약에도 대리상 조항 유추적용 여부 - 판매점을 사실상의 대리상으로 간주해 상법 제92조의 2항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쟁점

상법 대리상(agent)의 보상청구권 규정

- 상법 제92조의2(대리상의 보상청구권)
- ①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히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전 5년간의 평균연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연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유럽총판계약 종료 + 보상청구 중재 사례

- 한국회사 광학제품 제조업체 A사 vs 유럽 총판
- A사 유럽지역 영업을 위해 체결한 국제 판매점 계약 3년 기간 만료로 종료됨
- 유럽 총판이 A사에 계약기간 영업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총 600만달러 (약 70억원) 요구
- 2015년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 중재 신청
- 중재판정부 구성 :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 중재인 구성
- 상법 제92조의 2항 유추적용 주장: 대리상뿐만 아니라 판매계약에도 유추적용해 보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학설 및 대법원 판례 제출
- 참고: 독일 상법에 한국상법과 유사한 내용의 조항 존재 + 마찬가지로 판매점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 중재판정 : 한국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유추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청구기각 + **보상청구권 불인정 결론**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제조자나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도, ① 예를 들어 특정한 판매구역에서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른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처럼 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조직에 편입됨으로써 대리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자신이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조자나 공급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제조자나 공급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으며, ③ 아울러 계약체결경위,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자본과 그 회수 규모 및 영업 현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리상과 마찬가지로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상법상 대리상이 아니더라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 "제조자나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도, ① 예를 들어 특정한 판매구역에서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른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처럼 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조직에 편입됨으로써 대리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자신이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조자나 공급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 관계를 이전하여 제조자나 공급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 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으며, ③ 아울러 계약체결경위,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자본과 그 회수 규모 및 영업 현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리상과 마찬가지로 보호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상법상 대리상이 아니더라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 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매가대리점계약을 통하여 일정한 판매구역에서 피고의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피고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등 사실상 피고의 판매조직에 편입되었다거나, 또는 원고가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피고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 관계를 이전하여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 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 를 유추적용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계약종료시 보상불인정 계약조항의 효력여부

- 독점판매계약 종료 시 영업기여에 대한 보상청구 불인정 조항의 무효주장 사례
- 보상 불인정 조항 - '판매점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미래 이익이나 기타 손해 등과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사전 포기**
- 신청인 판매점은 "상법 제92조의 2항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무효"라는 주장
- 사전 포기조항의 효력 - 실무적 분쟁이 빈번한 문제 조항
- 중재판정 : 한국 하급심 판결 등을 근거로 "오스트리아나 독일의 보상청구권이 강행규정 성격을 띠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 상법 제92조 2항은 강행법규가 아니다"고 판단
- 신청인 판매점이 보상청구권을 포기한 계약은 유효함

서울고등법원 2005. 1. 14. 선고 2004나14040 판결

“상법 제92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대리상계약에 의한 당초의 보수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비록 그 입법취지에 일부 강행법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이 입법 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강행법규성 부정 ! + 중재대상 + 국제계약조항의 효력인정

계약종료 후 보상청구 포기 합의서

- 독점판매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 포기 합의서 무효주장 사례
- 공급자 외국회사 대형의료기기 업체 vs 판매자 한국 총판업체 독점판매계약
- 계약해지 + 판매점의 재고 인수 + 판매점에게 인센티브 금액 지급 (but 소액!) + Final Agreement (Termination Agreement) 작성 - “더 이상의 어떤 보상청구도 없다”는 취지의 합의서
- BUT 한국업체 총판에서 외국본사 상대로 독점판매계약서에 따라 대한상사 중재원에 ICC 중재 신청
- 계약조항 - 중재지 한국, 적용법 한국법
- 청구 요지: 상법 제92조의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유추적용 주장 + 외국본사에 대해 추가적 보상청구

판매점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주장

• 한국총판 주장요지

- 총판은 실질적으로 대리상과 같은 지위 + 상법 제92조의2 유추적용되어야 함.
- 상법 제92조의2는 강행규정 + 당사자 합의로 보상청구권을 배제하는 것 허용되지 않음.
-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대리상 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계약서 12.5조(계약종료 이후 손해에 대한 배상을 포기한다는 내용)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 아님.

• 공급자 외국회사 주장요지

- 판매계약 + 상법 제92조의2 대리상 아님 + 상법 제92조의2의 유추적용 불가
- 대법원 판례의 유추적용 요건 충족하지 못함 - 판매점은 계약종료 직후에 공급자의 경쟁사와 판매점계약을 체결하여 기존에 자신이 획득한 고객망을 활용하고 있기에 판매점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이 공급자에 현존하지 않음.
- 독일 상법 제89조의2에서 보상청구권의 사전배제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반면 우리나라 상법은 해당 법문 없음. 보상청구권의 강행법규성 배제 취지로 해석됨
- 상법 제92조의2가 강행규정이라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계약 종료시에 보상청구권을 사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함.
- 계약종료 후 final agreement로 사후 포기한 것

중재판정 - 보상청구 포기 가능

• 중재판정 요지

- 보상청구권 유추적용 요건 - 3가지 제시
 - 판매점이 공급자의 영업조직에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 판매점이 계약해지 후 공급자에게 고객정보를 양도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 공급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의 재판매가격을 통제해야 한다.
- 본건 - 유추적용 요건 불충족 + 보상청구권의 사후적 포기
- 계약종료 후 당사자가 더 이상 양자간 아무런 보상/배상도 없다고 합의한 것은 상법 제92조의2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상태에서 더 이상 아무런 보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 + 화해계약 + 상법 제92조의2가 강행법규이라는 확실도 분쟁발생 후 당사자의 권리포기 가능 입장
- 중재판정: 한국 판매점의 보상청구 기각

참고 - 독점계약의 Risk 및 대응방안

- ◆ 필요성 : 독점권 보장 없는 한 사업성 확보 어려운 경우
- ◆ **RISK** :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 라이선스 계약 시 실시자 licensee의 최소 판매수량 또는 최소 로열티 지급액 약정 없는 경우 - 특허권자 본인 실시불가 + 제3자 실시허락도 불가, 특허권자 licensor 수익확보 방안 없음
- ◆ 공동개발 및 독점공급계약 또는 독점판매계약: 독점공급 가격조건이 맞지 않거나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 시장가격 또는 제3자 공급가격과 차이가 많은 경우 - 완제품 경쟁력 확보 불가 + 사업성 결여로 계약이행 불가능
- ◆ **대응방안** : 최소 수량 또는 최소 로열티 보장 조건 부가 + 조건 미성취에 따라 계약 해제, 해지 OR 독점조건을 비독점 조건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
- ◆ **조항 예문** : "라이선시 실시자는 특허 실시대가 중 경상로열티로 판매량의 3% 또는 연 총 *억 원 중 많은 금액을 라이선서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 라이선시 실시자가 위 특허실시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라이선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본 계약 대상특허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은 통상실시권 허여로 한다."

국제계약, 영문계약, 계약분쟁, 손해배상, 민형사소송,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